

## 기술혁신 애로요인 조사결과

본 자료는 1992년 2~3월에 걸쳐 과학기술정책기획본부에서 주관 수행한 기술혁신 애로요인조사」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.

### 1. 과학기술인력 양성·활용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① 교육제도의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과대학을 5년제로 하여 1년은 산업체에 근무토록 제도화</li> <li>대학원 중심대학,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</li> <li>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매 2년마다 개편</li> <li>이공계 졸업학점을 160학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장 실습결과의 학점취득을 양성화</li> <li>산업계 연구인력의 연구결과에 의한 박사학위 취득제도 도입</li> <li>중·고교 과정의 과학과목 비중을 크게 확대</li> </ul> <p>② 출연(연) 등에서 단기기술교육과정 개설 또는 방학중 대학교수 초빙 연구교육 실시 (S기업(연)→중소기업의 경우 1년이상 해외 장기 파견연수는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)</p> <p>③ 국내외 고급인력의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소 채용 해외과학기술자에 대한 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인턴 사원제도(3-6개월) 등 산업체 근무제도 일부 시행중</li> <li>복선형 기술교육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술대학제도 도입 추진중(교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</li> <li>'96년까지 9개교 선정·지원예정</li> <li>대학·출연(연) 연계교육 과정 및 과기원 서울 본원의 「산·학제 및 연구원과정」 운영중</li> <li>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정보산업인력 단기 양성과정 운영중</li> <li>국내체류가능기간(출입국 관리법시행령 제7조)</li> </ul>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택·자녀교육 등 지원요망 (H기업(연)→해외기술자 채용에 따른 대우, 주거,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적임기술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2인 이외에는 채용할 수 없었음)</p> <p>④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의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병역특례요원 T/O 확대 요망</li> <li>◦ 특례대상 연구요원의 기준을 석사에서 학사로 하향조정 (H기업 등→지방연구소에는 석사급이 오지 않고, 학사에 비해 채용폭이 좁으며 기업에서 2년간 연구하는 것이 석사 2년 경력보다 연구수행에 보다 효율적임)</li> <li>◦ 특례요원배정이 사업영위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유관분야 연구원 확보에 애로 (S기업(연)→사업다각화 및 기술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·전자분야 연구원이 필요하나 특례배정이 화학분야에 제한되어 있어 유관분야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애로)</li> </ul>	<p>—산업상의 특수한 기술·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청된 자는 4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, 연장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거문제(외국인 토지법 제5조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—1세대 1주택 자기주거용 660m<sup>2</sup> 이하의 토지는 사전 신고한 후 취득가능</li> <li>—기타의 주거문제는 초청기관에서 자체 해결함이 타당</li> </ul> </li> <li>◦ 『석사이상의 학위』를 취득한 자에 한정 (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—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</li> </ul> </li> <li>◦ 현재 병무청 방침(심의회의의견)에 따라 유사분야의 전공자로 일부 제한하고 있음. (예 시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기업종 : 전기공학</li> <li>• 통신업종 : 통신공학, 전자통신공학</li> </ul> </li> </ul>

## 2. 과학기술정보의 수집·유통 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① 정보의 수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채널과 심층정보가 부족하므로 분야별 외국기술정보 전문기관, 기술예측 및 시장정보 전담기관 설립요망 (K기업(연)→미국전자회사가 기존의 PCB를 고전압용 PCB로 개체, '92. 7월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나 PCB제조업체인 H전자조차 최근에야 정보를 입수, 고전압 PCB용 수지개발이 시급하나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) (현대자동차(연)→미·일보다는 EC쪽의 특</li> </ul>	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 제도
<p>허정보가 특히 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 확보 지원 요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보분석전문가 부족으로 정보의 신뢰성 저하</li> <li>◦ 국제 심포지움 초록집 제작·배부 창구설치</li> </ul> <p>② 정보의 유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특허 D/B의 표준화 미비로 검색에 많은 노력 투입</li> <li>◦ 각 대학도서관, 연구기관, 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network 구성 및 D/B 구축</li> <li>◦ 국제 심포지움 발표자료의 분야별 D/B화</li> <li>◦ 신물질 연구의 경우 정보파악 및 검색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애로 (일본 동경의 한 교수는 1년에 10개 정도의 신물질을 찾는데 K회사와 연계하여 2시간만에 신물질 여부를 판정해 주고 2시간 후에 변리사가 와서 특허출원을 해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특허정보 D/B중 일반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이 전산망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고, 심층 전문 특허정보는 특허청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음.</li> </ul>

3. 기술개발지원 조세지원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 제도
<p><b>【내국세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5%로 상향 조정</li> <li>② 사내기술대학(원) 운영경비에 대한 10% 세액공제의 확대요망</li> <li>③ 노후 실험장비 개체촉진을 위한 감가상각 제도의 개선</li> <li>④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당해년도 지출액의 10%(중소기업 15%) +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 증가분의 10%(조감법 제17조)→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원칙 설정(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)</li> <li>◦ 운영경비(교재비, 실험실습비, 강사료등)의 10% 세액공제(조감법 제17조)</li> <li>◦ 연구개발장비의 내용년수를 제조설비와 동일하게 적용(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)</li> </ul>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과거처 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연구비 기부금의 조세감면혜택 부여요망 (M 비영리(연)→기부금 조세감면혜택이 '88. 12부터 폐지됨에 따라 출연금 또는 그 운영과실만을 가지고 운영해 오던 비영리연구기관으로서는 자금원이 막혀 연구활동이 위축)</li> <li>◦ 비영리 연구기관의 기금운영과실이나 수익사업운영 소득중 40/100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되고 있으므로 면제 요망</li> <li>◦ 비영리 연구법인의 자산변동의 경우 총 자산의 2/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의 면제요망</li> <li>◦ 종업원 총급여의 0.5%를 매월 납부하는 사업소세의 면제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, 기업이 사회복지, 문화예술, 교육연구, 종교자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7/100+ 주식발행자본금의 1/12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(법인세법 및 제18조 및 시행령 제42조, 조감법 제49조)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</li> <li>-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→한도에 관계 없이 전액 손금산입                 </li> <li>◦ 정부로부터 인·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, 과학기술진흥단체 등은 소득금액의 60/100까지만 손금인정(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항)</li> <li>◦ 비영리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대하여는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/1000를 등록세로 부과(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)</li> <li>◦ 종교단체,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정당 등의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정부출연(연)을 포함한 비영리 연구법인은 납부해야 됨. (지방세법 제124조의 2 및 시행령 제207조)</li> <li>◦ 수입통관절차(관세법 제137조 내지 제149조의 2)                    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선적서류도착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보세창고운반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수입신고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물품검사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서류심사및 세액확정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세금납부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수입면허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→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물품반출</td> </tr> </table> </div> </li> </ul>	선적서류도착	→	보세창고운반	→	수입신고	→		물품검사	→	서류심사및 세액확정	→		세금납부	→	수입면허					→										→					물품반출
선적서류도착	→	보세창고운반	→	수입신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→		물품검사	→	서류심사및 세액확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→		세금납부	→	수입면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→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→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물품반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【관 세】</b></p> <p>①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용 시약·재료 등의 수입통관시 장기 간소요로 실험시기 놓치는 애로발생 (Y기업중앙(연)→연구용 시약 수입의 경우 대개 미량 사용이 자주 필요한데 구매기간이 평균 2개월 이상으로 적시공급이 안되고 있으며 미사용 재고품이 2억원 정도에 이룸) (D기업(연)→AIDS 진단용 시약 개발 위해 AIDS 생성세포를 미국국립보건연구원(NIH)에서 무상으로 가져와 통관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서 1-2일간 지체되어 세포가 죽어버렸음)</li> <li>◦ S/W 또는 희귀약품 수입의 경우 특히 통관에서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연구용인 경우 긴급수입 통관허가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 요망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실험용시설, 장비 등에 대한 일선 세관원의 전문지식 결여로 통관이 지연</li> <li>◦ 실험기자재 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세행정의 개선 요망</li> <li>② 연구용 장비 도입시 내장된 S/W에 대한 관세 감면 불혜택 [고려아연(연)→'89년에 열분석기를 \$92,000에 도입하면서 동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S/W를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였으나 세관에서는 관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음]</li> <li>③ 무역상사·오피상·외국친지를 통해 구입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도 관세감면 요망</li> <li>④ 기술도입시 도입되는 설비·부품·S/W에 대한 원천관세징수로 기업부담이 과중</li> <li>⑤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(5년) 단축 요망 [H기업(연)→관세감면 연구용품은 보통 1-2년이 지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불필요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] [S기업(연)→샘플류는 종류별 사용기간이 다양하며 주로 분석용으로 사용되는데, 분해연구시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샘플을 창고에 계속 보관해 두어야 함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B/L상 S/W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세 감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</li> <li>◦ 「관세감면대상기관」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(관세법 제28조의 5) →용도확인 등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음.</li> <li>◦ 기술도입 등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가격에 도입기술평가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(관세법 제9조의 3, GATT 신평가 협약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)</li> <li>◦ 관세감면 학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, 시약·재료는 1년 (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사후관리 사무취급요령/관세청 고시)</li> </ul>

4. 기술개발금융지원부문

제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<b>【융자담보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과도한 담보요구로 융자받기가 어렵고 아직도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관행이 상존 [H기업→3-4년전에는 정책자금 활용이라는 이유로 융자금의 30-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금에 가입토록 권유 받았으나 근래에는 100%까지 요구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금융기관의 채권확보방안으로 이용되고 있음. * 부당한 「꺾기」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실질적인 신용보증제도 정착 필요</li> </ul>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[N기업(연)→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이용서 20%의 채권취득을 권유형태로 요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인보증, 주택보증을 요구</li> <li>기술개발형 중소기업, 유망기술개발품목 등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요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</li> </ul> <p>[L기업(주)→기술개발초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결과 재무구조가 나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어 IR 52 수상제품마저도 기업화 자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사내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동 수상제품인 “종합객실 관리시스템”의 팀장이 이직]</p> <p><b>【용자신청 및 사용절차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자신청시 제출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</li> </ul> <p>[H기업(연)→사업비 내역을 통해 이미 제출한 서류와 거의 유사한 서류제출 요구 및 기본서류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은행별 차입금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, 초기에 비용확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확한 비용명세 자료를 요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기술개발자금사용 절차 간소화 요망</li> </ul> <p>[N기업→국내기자재 구입시 기자재 납품 회사가 산업은행에 입금표, 인감증명,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M기업과 산업은행간 한번 더 거래정산을 하게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설자금용자의 경우 시설물 입고 증빙서류가 필요하나 외국산 기자재의 경우 Delivery에 6-8주가 소요되어 용자 지연</li> </ul> <p><b>【용자대상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/W 개발업체가 도·소매,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업에 비해 대출이 불리</li> </ul>	<p>현행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음.</li> <li>*금융요원의 전문성 확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결 필요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/W 개발업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것이 현실임</li> <li>-국민투자기금의 수요자 금융지원수혜불가</li> <li>-한국은행의 어음재할인 혜택 수혜불가</li> </ul>

5. 신기술제품의 기업화 및 시장진출 촉진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<b>【신기술의 기업화】</b></p> <p>① Pilot Plant 엔지니어링기술 능력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, 출연(연)에 엔지니어링센터 설립 등이 필요                  [○○연구소→3년전 폐자원 활용기술을 실험실에서 개발하였으나 Pilot Plant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사장되고 있음]</p> <p><b>【신개발제품의 시장진출】</b></p> <p>① 정부규격 등의 제정 미비로 신장진출에 애로                  ◦ 신개발제품에 대한 정부규격 미비로 판매상애로                  [K기업(연)→신규개발품인 고전압 절연물에 대한 KS, 한전규격(ESB)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구매 및 시판에 애로]                  [H기업(연)→애폭시등의 프라스틱수지를 활용하여 내구성과 생산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KS, Q마크 등을 부여받지 못하여 실제 건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]</p> <p>② 시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창출 유도 필요                  [K기업→시제품은 여러대를 만들어 사용한 후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여 양산하여야 하나 시제품에 대한 수요업체의 사용기피로 2-3대 생산에 그쳐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]                  ◦ 개발제품과 동종의 외국제품 덤핑으로 시장 진출에 애로                  [SK기업→폴리우레탄 Binder를 개발하자 kg당 10,000원 하던 일본제품의 가격이 kg당 2,000원으로 덤핑판매]                  [SM기업→마레징 250 Grade 국산화 개발 후 일본제품의 가격이 kg당 30,000에서</p>	<p>◦ Pilot Plant 단계는 위험부담이 높은 부분으로서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며,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어 정부에서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</p> <p>◦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규격 없이도 제조·판매가능                  ◦ 정부의 규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절차 및 기간이 필요함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해관계인의 신청 (개인·법인 또는 국가기관) → 국가기관의 검토·심사</p> </div> <p>· 규격안 설명서 ·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의 검토의견서 (필요시)                  · 학회, 연구소, 시험검사소의 의견청취의 검토의견서 (필요시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→ 심의회의결 → 확 정 → 통 지 (신청인)</p> </div> <p>◦ 시제품에 대한 강제구매는 불가능 하며, 정부·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구매는 부분적으로 가능                  - 다만, UR협상 등의 원칙에 배치될 것으로 우려됨.                  ◦ 『덤핑방지관세제도』를 활용할 수 있음.                  - 그러나,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 등으로 인하여 과감한 조치는 어려운 실정임.</p>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15,000으로 덤핑판매]</p> <p>③ Pilot Plant 수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[D기업(연)→신개발제품인 전자부품 PTC의 경우 Pilot Plant를 통해 월 60-80만개 생산이 가능하며, 이는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인데도 현행법상 공장 등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생산 및 시판이 가능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]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ilot Plant에서 제조한 시제품이 정부의 사전허가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지만, 조세추징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.</li> <li>- 관세감면물품에 의한 Pilot Plant건설→관세추징 문제</li> <li>- 세액공제받은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→연구요원과 생산요원의 불분명으로 인한 조세추징문제</li> </ul>

### 6. 정부연구개발사업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① 연구기간 5-10년의 장기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3년 정도의 연구비 일괄배정제도를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5년을 걸쳐 지출가능(계속비 제도/예산회계법 제22조)</li> </ul>

### 7. 협동연구촉진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의 OJT 교육을 대학이 담당</li> <li>○ 대학부설연구소에 산업체 특별과정을 설치</li> <li>○ 대학교수의 기업 파견제도 도입</li> <li>○ 대학과 연구소간 연구비, 연구자의 상호교류를 제도화</li> <li>○ 대학 연구결과와 산업계 이전을 위하여 출연(연)에 전담기구를 설치</li> </ul>	

### 8. 고가장비의 공동활용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p>① 장비의 공동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(연)보유 분석장비 목록, 분석가능 내용, 활용방법 등을 기업체에 적극 홍보요망</li> </ul>	

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고가장비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역별로 공동이용센터 설립 요망</li> <li>◦ 출연(연) 장비의 산업계 대여, 사용, 위탁시험 등 개방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</li> <li>◦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가칭 “연구시설 백서”발간 필요</li> <li>◦ 국가차원의 장비보수센터 운영</li> <li>◦ 연구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연구원이 없어 공동 이용이 어려움</li> </ul>	

9.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부문

제기된 건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연구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[’91년말 200만원의 연구 장려금중 110만원이 세금]</li> <li>◦ 연구원에 대한 신분보장, 급여 현실화, 연구성과급 지급 등 우대풍토 조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출연(연) 연구원의 비과세 소득범위(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, 제12조의 2, 제13조의 2) - 연구활동비 : 월 20만원이내 - 특히, 실용신안 획득기술의 기술료 수입 인센티브 : 전액</li> <li>◦ “정부출연(연)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”의 일환으로 추진중</li> </ul>

김 대 승